

종합감사

감사 보고서

- 청주교육대학교 종합감사 -

2025. 9.

교 육 부

감사결과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감사결과 실명이 공개된 모든 학교가 비리에 연관되어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대상 기관 현황	2
III. 감사결과	4
1. 감사결과 총괄	4
2. 적극행정 면책 처리 현황	5
3. 처분 요구 사항	6
(1) 전임교원 임용 시 활용되는 연구실적물 인정기준 부적절(통보)	6
(2) 조교(교육공무원) 채용 관계 공무원 직무관련자 미신고 부적정(기관경고·주의·통보)	12
(3)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미작성 및 미공개(기관경고·통보)	17
(4) 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기관경고·통보]	20
(5) 외부강의 시 복무 처리 등 부적정(기관주의·경고·주의·통보)	22
(6) ㄱ사업 관리 소홀[기관경고·통보]	28
(7) 직원 학생지도비 지급 관련 실적 산정 및 점검 부적정(주의·시정·통보)	33
(8) 맞춤형 복지점수 중 가족복지점수 오배정(통보)	39
(9) ♡♡ 예산 편성·집행 규정 미준수 및 소관 위원회 운영 미흡[기관경고·통보·<별도조치>통보]	42
(10)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 부적정(주의·시정)	53
(11) 시설공사 하자검사 부적정(기관경고·통보)	59
(12) 시설공사 법정경비 정산 부적정[징계·경고·시정·<별도조치>통보·고발]	64
(13) 전기설비 연간 점검계획 미수립 및 안전점검 등 소홀[기관경고·주의·통보·통보(시정완료)]	71
IV. 현지도치 사항	75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청주교육대학교는 감사주기를 고려할 때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였다. 이에 청주교육대학교의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자 2024년 행정감사 기본계획에 청주교육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반영하고 감사를 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청주교육대학교(부설 초등학교 포함)의 교직원 인사 및 복무 관리, 예산 및 회계 관리, 입시 및 학사 관리, 시설물 안전 및 재산 관리, 민원·비위 제보에 따른 확인 필요사항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2021. 1월 ~ 2024. 4월 감사일까지 수행한 업무를 점검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청주교육대학교에 대한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주요 언론보도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고, 2024. 4. 15.부터 4. 21.까지 사전 서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24. 4. 22.부터 5. 3.까지 10일간 감사인원 9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2024. 5. 2. 청주교육대학교의 주요 보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 마감회의를 하고, 2024. 9. 27. 서면으로 업무 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교육부에서는 감사 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5. 3. 31. 감사처분심의회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 기관 현황¹⁾

1. 주요 연혁

청주교육대학교는 1941년 청주사범학교로부터 시작하여 1984년 4년제 교육대학으로 승격되었고, 1995년 교육대학원 설치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초등학교 교원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2. 학생 현황

청주교육대학교는 [표 1]과 같이 2024. 4. 1. 기준 대학 및 대학원의 입학정원 합계는 520명, 재적학생 합계는 1,498명, 재학생 합계는 1,414명이다.

[표 1]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현황

(단위: 명)

입학정원	대학		입학정원	대학원		입학정원	계	
	현원			현원			현원	
	재적학생	재학생		재적학생	재학생		재적학생	재학생
286	1,159	1,126	234	339	288	520	1,498	1,414

3. 교직원 현황

청주교육대학교는 [표 2]와 같이 2024. 4. 1. 기준 교원 수는 221명이고, 직원 수는 62명이며, 교직원 합계는 283명이다.

[표 2] 청주교육대학교 교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교원				직원					합계
	총장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소계	일반직	특정직	고용직	기타	소계	
교직원수	1	71	149	221	43	13	3	3	62	283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기관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대학알리미 공시정보 및 감사대상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4. 예산 현황

청주교육대학교의 세입·세출예산은 [표 3]과 같이 2023년 27,299백만 원에서 2024년 27,634백만 원으로 335백만 원(1.2%) 증가하였다.

[표 3] 청주교육대학교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4년(예산)	2023년(예산)	증감(비율)
대학회계	25,736	25,615	121(0.5)
산학협력단	1,442	1,257	185(14.7)
발전기금	456	427	29(6.8)
계	27,634	27,299	335(1.2)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감사결과 총괄

(단위: 건, 명, 원)

구분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별도조치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계			
청주교육 대학교	-	1명 (1건)	2명 (2건)	10명 (11건)	13명 (14건)	· 기관경고 7건 · 기관주의 1건 · 통보 11건 · 통보(시정완료) 1건 【합계 20건】	· 시정(회수) 3건, 52,936,000원 【합계 3건】	· 통보 2건 · 고발 1건 【합계 3건】

※ () 안은 신분상 조치 대상자에 대한 지적 건수 합계임

※ 처분 요구 인원 산정 시 신분상 조치가 경합된 경우 상위 조치로 함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교원 승진 시 활용되는 연구실적물 인정기준 부적정

- 「청주교대 교원 임용 규정」 상 연구실적물 분류 기준이 미비하여 논문 체계를 갖추지 않아 연구실적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77건을 연구실적물로 인정하고, 교수 1명을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 임용
- * 승진 소요기간(4년) 이내 전공분야에 관한 것으로 형식과 내용이 논문체제를 갖춰 발표된 것이어야 하고, 공인된 학술지 또는 ○○등재 학술지 내지 등재후보 학술지 또는 저서로 제출

(나) 7자사업 관리 소홀

- 교원 2명이 단기국외연수 후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을 표절 또는 요약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대학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결과 보고서의 표절 여부 및 내용·서식 등 충실성을 미점검

(다) ♥♥ 예산 집행 및 소관 위원회 위원 위촉 부적정

- 예산 지원 기관인 ◀◀, ◆◆의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참여원에게 전문가 활용비 등을 지급하고, 위원회 외부위원을 과반수 미만으로 위촉·운영

(라) 시설공사 감독·검사·정산 업무 부당

- 시설공사 추진 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실제 시공 내역 및 증빙서류 확인 소홀로 공사비 과다 지급(10건, 52,436천 원)

이에 대하여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에게 관련 규정 정비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시설공사 업무를 해태한 관련자에게 징계(경징계 이상) 조치하고, 과다 지급된 공사비는 회수(합계 52,436천 원)하도록 하는 등 총 13건의 처분을 요구하였다.

2. 적극행정 면책 처리 현황: 해당사항 없음

3. 처분 요구 사항: 13건[붙임 참조]

교 육 부 통 보

제 목 전임교원 임용 시 활용되는 연구실적물 인정기준 부적절

소 관 기 관 청주교육대학교

조 치 기 관 청주교육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청주교육대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및 「청주교육대학교 교원임용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속 교수·부교수의 임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청주교육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전임교원의 업적을 평가·관리·활용하여 교수의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교육공무원법」 제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2에 따르면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등을 말하고, 교육부장관은 소속 교수·부교수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그리고, 「청주교육대학교 교원임용 규정」 제27조, 제28조, 제30조에 따르면 임용 대상자인 조교수는 부교수로 임용되기 위해서 연구실적은 승진 소요기간²⁾ 이내 400퍼센트 이상을 공인된 국제학술지 또는 ○○등재 학술지 내지 등재후보 학술지 또는 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실적물은 전공분야에 관한 것으로 형식과 내용이 논문체제³⁾를 갖춘 것으로 발표된 것이어야 하고, 저서(출판된 것에 한함), 학회지, 논문지, 정기간행물, 그외에 있어서는 연구·발표·전시 및 입선을 포함하며,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 논문, 학술연구진흥규정에 따라 연구한 연구 보고서가 해당된다. 또한, 「같은 규정」 제31조에 따르면 공동 연구실적물의 인정 환산율은 논문과 번역서의 경우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 이상 30%이며, 저서의 경우 1인 200%, 2인 140%, 3인 100%, 4인 이상 60%이다. 예·체능계 실기(연구, 발표, 전시, 입선 등)에 대한 연구실적 심사기준은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연수 환산인정률 <별표 1>에 의하되 평점 1점을 연구실적 100%로 인정한다.

한편, 「청주교육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 제5조, 제12조에 따르면, 이 규정에 의한 업적평가의 결과는 교수의 승진 및 재임용 심사, 정년보장의 심사, 연구보조비(성과급) 지급, 연구년 교원 및 업적 우수교수 선정, 성과연봉 지급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연구 영역의 원점수는 <별표 2>에서 정하는 평가항목, 배점 및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따라서 청주교육대학교 조교수는 부교수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청주교육대학교 교원임용 규정」에 따라 승진 소요기간 이내 전공 분야에 관한 연구실적물을

2) 「청주교육대학교 교원임용 규정」 제14조(승진 소요기간)에 따르면 승진임용에 소요되는 최저 소요기간은 조교수에서 부교수로는 4년, 부교수에서 교수로는 5년이다.

3) 「청주교육대학교 교원임용 규정」 및 「청주교육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 등에서 '논문체제' 개념을 정의한 것은 없으나, 일반적인 논문체제는 제목, 저자정보, 초록,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부록의 형식을 취한다.(○○ 등재(후보) 학술지 논문 투고 형식도 동일)

제출하되, 형식과 내용이 논문체제를 갖춘 것으로 발표된 것이어야 하며 400퍼센트 이상을 공인된 학술지 또는 ○○ 등재 학술지 내지 등재후보 학술지 또는 저서(출판된 것에 한함)로 제출하여 연구실적을 인정받아야 하고, 예·체능계 실기의 경우에는 연구실적 환산인정률에 따라 연구실적을 인정받아야 했다.

또한, 「청주교육대학교 교원임용 규정」에 따라 교수 임용 시 연구실적물을 심사할 때는 「청주교육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 제5조에 따라 교수 업적평가 결과를 교수의 승진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여 연구실적물 인정기준을 판단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청주교육대학교는 2022학년도 2학기 ■ 전임교원 임용을 추진하면서 [표 1]과 같이 A가 연구실적물로 제출한 ㄱ 5권에 대해 형식과 내용이 논문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아 연구실적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을 부여받아 통상적인 ‘책’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저서’로 분류하고 [표 1] 연구실적물 ①, ②에 대해 권당 단독저자 인정률 200%, 총 400%의 연구실적물로 인정하여 해당 교수를 2022. 00. 00.자로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임용하였다.

[표 1] 2022학년도 2학기 ■ 전임교원 임용(조교수→부교수) 현황

승진임용 대상자 현황			연구실적 심사의뢰 내역				심사 현황 ⁴⁾		부교수 승진임용
심화 과정	성명 (직급)	신규임용	구분	연구 실적물		심사위원	심사 결과		
-	A	2018.00.00.	저서	① ㄱ(2018)	B (청주교대) C (청주교대) D (□□)	“수” (적격)	2022.00.00.		
				② ㄴ(2018)					
				③ ㄷ(2016)					
				④ ㄹ(2016)					
				⑤ ㅁ(2014)					

4) 「청주교육대학교 교원 임용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연구실적은 해당 전공분야의 3인 이상이 심사하되, 심사대상자의 직위 이상의 자로 위촉하고 그 중 1인 이상은 타교에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며, 승진임용 연구실적 심사평정은 각 편이 평균 “우”(4.0.) 이상이어야 한다.

청주교육대학교는 B 등 3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연구실적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사위원들은 현장에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연구실적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⁵⁾

한편, 청주교육대학교는 A의 임용 연구실적물로 인정한 ① ㄱ(2018), ② ㄴ(2018)에 대해 조교수로 임용된 이후의 연구실적인지 여부는 당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표 2] A 연구실적물 세부 현황

연구실적물	ISBN	분류	연도	발표일자	출판사	페이지수	판매가격
① ㄱ(2018)	-	-	2018	2019.00.00.	-	00	15,000원
② ㄴ(2018)	-	-	2018	2019.00.00.	-	00	40,000원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청주교육대학교는 승진임용 등의 연구실적물을 인정할 때 규정에 따라 ‘저서’의 형식과 내용이 논문 체제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으나 연구실적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의뢰서 ‘구분’에 해당 ㄱ을 ‘저서’로 제출하여 통과하였고, 「청주교육대학교 교원임용 규정」에는 ‘저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ISBN을 부여받은 점을 고려하여 ‘저서’를 일반적인 ‘책’의 의미로 판단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청주교육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에서는 전문저술인 ‘저서’와 ‘기타(기타)’를 각각 200점, 100점으로 분류 및 배점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5) (평가) ㄱ 5권 모두 “수(5.0)”로 합격기준 충족

발생하는 혼란인 것 같다고 하면서 청주교육대학교 교수의 연구실적물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점수화하고 있는 기준은 「청주교육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이므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주교육대학교 교원임용 규정」의 연구실적물 평가기준을 「청주교육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연구실적물 대상기간 인정기준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게재일’, ‘발행일’, ‘발표일’로 하고 있으며, 그리는 발행되거나 발표하지 않으면 창작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검토결과

청주교육대학교는 임용대상자가 제출한 연구실적물에 대해 「청주교육대학교 교원임용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차적으로 연구실적물의 형식과 내용이 논문 체제를 갖춘 것인지 판단했었어야 했고, 이런 형식과 내용이 논문 체제를 갖추지 못한 ‘그’를 ‘저서’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실적이 있었다면 그 실적을 요구하여 평가하는 것이 더 타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해당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주교육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에 따르면 ‘저서(국내 전문학술서, 200점)’와 ‘그(그, 100점)’은 평가 배점의 차이가 크다. 이는 청주교육대학교가 소속 교수의 연구실적을 평가할 때 ‘저서’와 ‘그’를 동일 수준의 연구실적물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주교육대학교 교원임용 규정」에 따라 ‘그’를 ‘저서’로 평가하는 것은 교수 업적평가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근 타 국립대학의 사례를 살펴본 바로도 임용 규정상 연구실적 평가기준은 업적평가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⁶⁾

또한 일부 국·사립 대학교의 '저서'를 인정하는 기준을 비교해 보더라도 최소 150페이지 이상의 분량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십 페이지 분량의 'ㄱ' 2권을 '저서'로 인정하여 각 200%, 총 400% 연구실적을 인정한 점은 「청주교육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에서 국내 전문학술서(200점)와 출판된 ㄱ(100점) 간 배점을 달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 ◇에 상기 연구실적 분류와 인정기준에 대해 문의한 바에 따르면 대학 현장에서 이런 문제는 학문적 관행과 함께 계량화된 연구실적을 반영해야 하는 현실적인 한계에서 비롯되고 있고, 특히 ㄱ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위의 청주교육대학교 사례에서 부적정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연구자의 연구실적을 완전히 부정할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조치할 사항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은

교원 임용 시 연구실적물 분류 등에 대한 규정 미비로 부적절해 보이는 연구실적물 인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6) (□□) (교원 임용 규정 제14조)

(△△)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 제21조)

7) (▷▷) 200쪽 이상(시리즈 기획물 도서 제외)의 규모와 ISBN 코드를 갖춘 초판(연구실적 인정기준 지침 별첨 1)
(▽▽) 150페이지 이상으로 ISBN에 등록되고, 해당 교원이 저(작)자로 표기된 것에 한하여 인정(교원 업적평가지침 별표 2)
(◁◁) ISBN이 수록된 출판물로, 전공분야 국내외 전문학술저서 200쪽 이상의 분량과 다수의 인용주를 갖춘 것
(교수업적평가 시행세칙 제5조 제2항)

교 육 부

기관경고·주의·통보

제 목 조교(교육공무원) 채용 관계 공무원 직무관련자 미신고 부적정

소 관 기 관 청주교육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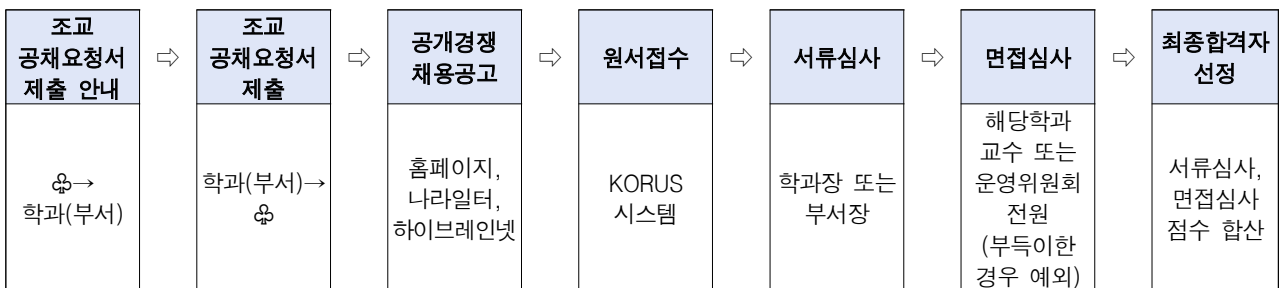
조 치 기 관 청주교육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청주교육대학교 조교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육공무원 조교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용된 대학회계직 조교로 구분되고, 「청주교육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이하 “조교 임용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그림]과 같은 절차를 거쳐 임용하고 있다.

[그림] 청주교육대학교 조교 임용 절차



자료: 「청주교육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 재구성

또한, 청주교육대학교 ☞는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원 조교를 임용하고 있고, 조교 채용 과정에 관계되는 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등을 적용받는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무원 행동강령(2022. 1. 13. 시행)」 제2조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는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2022. 1. 5. 시행)」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공무원은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주교육대학교에서 조교 채용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청주교육대학교 E는 ‘2022년 ♀ 조교’를 채용하면서 2021. 00. 00.부터 2022. 0. 00. 면접일까지 ♀에서 함께 근무(E가 직상급 보직자)하고 있어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F가 지원자⁸⁾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총장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고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위원으로 참여·평가하였다.

8) 서류심사 경쟁률은 5:1이고, 면접심사 경쟁률은 3:1이었음.

또한, 청주교육대학교 측은 위 '2022년 승 조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와 서류·면접심사 위원 간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의무가 있음을 사전 안내 또는 교육하지 않았고,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에서 위 E를 위원에서 제척하지 않고 참여하게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청주교육대학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조교 임용 규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서(승 포함) 소속 조교의 경우 서류심사는 부서장이, 면접심사는 운영(실행)위원회 전원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서장으로서 승장이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청주교육대학교 측은 「조교 임용 규정」에 제척에 대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심사위원에게 회피 안내를 하지 않았고, 당시 대학 내 회피·제척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으며,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제도가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하였다.

아울러, 승장은 심사에 참여하라는 승의 요청을 받고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지원자 중에 승 소속 F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서류심사에 참여하여 심사 시작 후에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승로부터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하였다.

나아가 승장은 해당 지원자와 사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없고, 채용으로 인해 얻을 이득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심사과정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② 검토 결과

청주교육대학교는 「조교 임용 규정」에 따라 ♣장(E)이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서류 및 면접심사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채용 업무와 관련해서는 대학 자체 「조교 임용 규정」을 적용하기 전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지침」 등 상위 규정을 우선 검토 후 적용하여야 하는 바,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이 상위 규정인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체 「조교 임용 규정」에 제척에 대한 사항이 없어 심사위원에게 회피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E는 감사 시 문답(2024. 4. 30.)을 통해 채용 주관 부서(♣)로부터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 안내받은 적이 없어 해당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였고, 대학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답변하고 있어 채용과 관련된 기관 차원의 체계적 교육 및 안내는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E는 2021. 2.에도 B 채용 심사 위원으로 참여·평가한 경험이 있고, '♣장'이 B, 조교 등 채용과 관련된 심사 위원으로 참여·평가할 수 있는 보직임을 고려할 때 업무 수행 시 직위에 맞는 고도의 주의와 관련 법령의 숙지가 필요하였고, 규정을 알지 못했다는 사유가 규정에 맞지 않는 행정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는 점은 처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은**

① 담당 부서(♣)로 하여금 채용 업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경고 조치하고,
(기관경고)

②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여 조교 채용 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무 관련자”임을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평가한 ㉸장 E에게 주의 조치하며, (주의)

③ 향후 유사 또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주교육대학교 공무원 행동강령」, 「조교 임용 규정」을 포함한 관련 규정 정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교 육 부

기관경고·통보

제 목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미작성 및 미공개

소 관 기 관 청주교육대학교

조 치 기 관 청주교육대학교 ☆☆

내 용

1. 업무개요

청주교육대학교 ☆☆는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에 따르면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되,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는 [표 1]과 같이 2023. 7. 7. 제152차 회의부터 2023. 12. 22. 제154차 회의까지 총 3회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표 1]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미작성 현황

연번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날짜(차수)	주요 심의안건
1	2023.7.7.(제152차)	-(안) 등 10건
2	2023.11.6.(제153차)	-(안) 등 6건
3	2023.12.22.(제154차)	-(안) 등 6건

자료: ☆☆ 제출자료 재구성

[표 2]와 같이 2017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총 41회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한 후에는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않았다.9)

[표 2]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미공개 현황

연도	회의록 미공개 횟수	주요 심의안건
2017학년도	6회	-(안) 등
2018학년도	6회	
2019학년도	6회	
2020학년도	5회	
2021학년도	6회	-(안) 등 47건
2022학년도	6회	-(안) 등 52건
2023학년도	5회	-(안) 등 46건
2024학년도	1회	-(안) 등 9건

자료: ☆☆ 제출자료 재구성

9)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회의록 미공개와 관련하여 의결하지 않았음.

관계기관 의견

청주교육대학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감사기간 동안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향후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시 기간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은

- 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소홀히 한 ☆☆에 경고 조치하고, (기관경고)
- ② 향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교 육 부

기관경고·통보

제 목 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

소 관 기 관 청주교육대학교

조 치 기 관 청주교육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청주교육대학교 ●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년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4대 폭력 예방교육”이라 한다)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국가 기관 등¹⁰⁾의 장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의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 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주교육대학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학에 소속된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의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교직원이 이를 이수하도록 하여야 했다.

10)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포함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청주교육대학교 소속 교직원 138명은 [표]와 같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표]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 현황

연번	연도	대상 인원	이수 인원	미이수 인원
1	2021년도	254명	204명	50명
2	2022년도	281명	232명	49명
3	2023년도	291명	252명	39명
소계		826명	688명	138명

관계기관 의견

청주교육대학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미이수자 중 약 80%가 강사로 학기별 임용 시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누락 등의 이유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였지만, 향후 관련 부서 및 각 학과와 긴밀한 협조 및 적극적인 안내·홍보를 통해 대학 구성원들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은

- ① 향후 소속 교직원이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등에 따른 4대 폭력 예방교육을 미이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업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관경고)
- ② ●가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을 보완하여 시행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교 육 부

기관주의·경고·주의·통보

제 목 외부강의 시 복무 처리 등 부적정

소 관 기 관 청주교육대학교

조 치 기 관 청주교육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청주교육대학교는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에 따라 소속 교원의 복무를 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공무원법」 제58조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8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등 및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0장에 따르면 공무원은 모든 외부강의 시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 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 강의에 대하여는 출장 처리하고,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¹¹⁾하도록 되어 있다.

11) (예) 겸직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담당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부 강의 등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7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공무원이 과도한 외부강의 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주교육대학교 소속 교직원들은 외부강의 시 출장·연가·외출·조퇴 등의 복무 처리를 하여야 했고, 청주교육대학교는 소속 공무원이 과도한 외부강의 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규정에 외부강의 등의 횟수 상한 등의 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청주교육대학교 G는 [표 1]과 같이 2022년 1월 5일부터 2024년 1월 12일까지 출장·연가·외출·조퇴 등의 복무 처리 없이 총 26건의 외부강의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G는 2023년 7~10월*에 총 18회에 걸쳐 48시간의 외부강의 등을 하였다.

* (7월) 5회, 12시간 / (8월) 3회, 9시간 30분 / (9월) 3회, 11시간 / (10월) 7회, 15시간 30분

[표 1] G의 복무 미처리 외부강의 등 현황

연번	기관	강의일	강의 시간	강의 내용/역할	복무 처리	외부강의 신고	
1	-	2022.1.5.	2:30	-	X	○	
2		2022.2.9.	2:30	-	X	○	
3		2022.4.11.	6:00	-	X	○	
4		2023.7.19.	2:00	-	X	○	
5		2023.7.24.	3:00	-	X	○	
6		2023.7.25.	3:00	-	X	○	
7		2023.7.26.	2:00	-	X	○	
8		2023.7.31.	2:00	-	X	○	
소계(7월) : 5회, 12시간							
9		2023.8.29.	1:00	-	X	○	
10		2023.8.30.	7:00	-	X	○	
11	2023.8.31.	1:30	-	X	○		
소계(8월) : 3회, 9시간 30분							

연번	기관	강의일	강의 시간	강의 내용/역할	복무 처리	외부강의 신고
12		2023.9.1.	7:00	-	X	○
13		2023.9.22.	2:00	-	X	○
14		2023.9.25.	2:00	-	X	○
		소계(9월) : 3회, 11시간				
15		2023.10.6.	2:00	-	X	○
16		2023.10.12.	6:00	-	X	○
17		2023.10.19.	1:30	-	X	○
18		2023.10.19.	2:00	-	X	○
19		2023.10.23.	2:00	-	X	○
20		2023.10.27.	1:00	-	X	○
21		2023.10.30.	1:00	-	X	○
		소계(10월) : 7회, 15시간 30분				
22		2023.12.21.	2:00	-	X	○
23		2024.1.12.	1:30	-	X	○
24	-	2023.8.25.	1:00	-	X	○
25	-	2023.12.19.	1:00	-	X	○
26	-	2023.11.21.	6:00	-	X	○ (신고 대상은 아님)

또한, 청주교육대학교 H 등 3명은 [표 2]와 같이 2021년 9월부터 2023년 6월 까지 겸직 허가는 받았으나 별도의 복무 처리 없이 타 대학에서 4개 과목을 학기 내내 정기적으로 강의하였다.

[표 2] 복무 미처리 출강 현황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출강 대학	강의 과목	시작일	종료일	출강 시간	겸직 허가	복무 처리	비고
1	-	-	H	-	-	2022.3.2.	2022.6.30.	매주 월 3시간 (2~4교시)	○	×	
2	-	-	I	-	-	2023.3.1.	2023.6.14.	매주 금 4시간 (13:00~17:00)	○	×	대면 : 8회 (나머지 원격 혹은 실습)
3	-	-	J	-	-	2021.9.1.	2021.10.7.	매주 월, 목 1시간 15분 (16:00~17:15)	○	×	대면 : 4회 (일부 주만 강의)
				-	-	2022.3.2.	2022.6.14.	매주 화 3시간 (14:00~17:00)	○	×	

아울러, 이번 종합감사 기간에 청주교육대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의 등 현황을 확인한 결과 1~2회의 외부강의 시 복무 처리 및 월 횟수 상한 관련 규정 등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일부 미진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우선, K 등 6명은 [표 3]과 같이 2021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외부강의 신고는 하였으나 복무 처리 없이 1~2회의 외부강의 등을 하였다.

[표 3] 기타 복무 미처리 외부강의(1~2회) 등 현황

연번	소속	직급	성명	기관	강의일	강의 시간	강의 내용/역할	복무 처리	외부 강의 신고
1	-	-	K	-	2023.9.7.	3:00	-	X	○
2	-	-	-	-	2021.4.15.	4:00	-	X	○
3	-	-	-	-	2023.12.1.	4:00	-	X	○
				-	2023.12.14.	2:00	-	X	○
4	-	-	-	-	2023.9.22.	1:40	-	X	○
5	-	-	-	-	2022.6.10.	1:20	-	X	○
6	-	-	-	-	2023.11.21.	2:00	-	X	○
				-	2021.6.18.	4:00	-	X	○

또한, 청주교육대학교는 교육부나 다른 교육대학교가 [표 4]와 같이 소속 교직원이 외부강의 등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외부강의 등의 월 상한 횟수, 시간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청주교육대학교 공무원 행동강령」에 외부강의 등의 횟수 상한 등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지 않았다.

[표 4] 타 기관 외부강의 등 월 횟수, 시간 상한 규정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월 3회 또는 월 6시간 초과 불가 · ■■■: 「■■■ 교직원 행동강령」 제17조,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월 3회 또는 월 6시간 초과 불가 · ▲▲: 「▲▲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6조,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월 3회 또는 월 6시간 초과 불가 · ▶▶: 「▶▶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의2,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월 3회 또는 월 6시간 초과 불가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청주교육대학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향후 출강 관련 겸직 허가 및 외부강의 신고서 접수 시 교원의 복무 처리 상황을 확인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② 검토결과

청주교육대학교는 복무 처리 없이 1~2회의 외부강의 등을 실시한 K 등 6명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체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번 종합감사에서 G가 4개월간 총 18회에 걸쳐 48시간의 외부강의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바, 청주교육대학교에서는 자체 「행동강령」에 월 상한 횟수 등을 명시하여 소속 교직원이 외부강의 등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 받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은

- ① 소속 교직원이 복무 처리 없이 외부강의 등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기관주의)
- ② 출장·연가·외출·조퇴 등의 복무 처리 없이 수차례 외부강의 등을 한 G에게는 경고 조치하며, (경고)

③ 겸직 허가는 받았으나 연가·외출·조퇴 등의 복무 처리 없이 타 대학에서 정기적으로 강의한 H, I, J에게 주의 조치하고, (주의)

④ 향후 소속 교직원이 복무 처리 없이 외부강의 등을 하거나 과도한 외부강의 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행동강령」을 개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교 육 부

기관경고·통보

제 목 ㄱ사업 관리 소홀

소 관 기 관 청주교육대학교

조 치 기 관 청주교육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청주교육대학교는 「청주교육대학교 교원단기국외연수 지원 지침」에 따라 매년 ㄱ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및 「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 등에 따라 교원 공무국외출장을 허가 등 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은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며, 방문국·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속 장관은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별도 서식에 따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이때 표절 여부 및 내용·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교육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제3조 제2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학교 소속 공무원 및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은 당해 학교의 장과 소속 기관의 장에게 각각 위임되어 있으며, 관광성·외유성 방문을 지양하기 위해 소수 기관 중심의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되, 결과보고서를 출장계획서상의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결과, 쟁점사항 및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매년 국립교육대학교, 국립대학교 등에 공문으로 안내하는 “국외출장제도 운영 시 주의사항”에 따르면 국외출장제도 운영시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국외출장으로 인해 국회·언론 등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며,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에 결과보고서 등록 시 충실성·표절 여부 등을 점검 후 승인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주교육대학교는 교원이 공무국외출장인 단기국외연수를 신청할 경우 방문국·방문기관과 사전 협의 및 관광성·외유성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하고, 공무국외출장자인 교원은 결과보고서를 출장결과, 쟁점사항 및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표절없이 상세하게 작성하며, 청주교육대학교는 결과보고서의 표절여부 및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청주교육대학교는 2022~2023년 기간 동안 그즈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11명의 교원을 선발하여 1인당 최대 2,500천 원 범위 내에서 연수비용 합계 26,939천 원을 지원하는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하였다.

그런데 이번 종합감사 기간 동안 교원 단기국외연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 [별표] “청주교육대학교 2022~2024년 교원 공무국외출장(단기국외연수) 현황”과 같이 11명¹²⁾ 교원의 공무국외출장 모두 사전 협의된 공식 방문기관은 없었고, 연수 일정 대부분도 해외 유명 관광지 방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L은 미국 연수의 결과보고서를 총 15줄로 작성하면서 그 중 약 11줄을 위키백과사전 등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발췌하여 보고서로 제출하였고, M은 일본 연수의 결과보고서를 총 5줄로 작성하면서 관광지 방문 지역을 단순 정리하여 보고서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청주교육대학교는 교원들이 신청한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방문기관과 사전 협의도 되지 않았고 연수 일정 대부분이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임에도 계획을 허가 하였으며,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관광지 방문 지역을 단순 정리하거나 인터넷을 요약한 내용임에도 결과보고서를 점검하지 않고 승인 처리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청주교육대학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그 사업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아 부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청주교육대학교 교원단기국외연수 지원 지침」을 개정하여 관광성·외유성 연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2) 11명 중 8명은 공무국외출장 시 배우자, 자녀 등 가족 동행(경비는 개인 부담)

조치할 사항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은

- 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원 단기국외연수 등 공무국외출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기관경고)
- ② 그 사업들을 검토하여 사업목적에 맞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청주교육대학교 2022~2024년 교원 공무국외출장(단기국외연수) 현황

연번	연도	학과명	성명	공무국외 출장계획서 제출일 (허가일)	방문 국가	출장기간	출장 목적	방문 세부일정 (공식 방문기관)	지원 예산 (천원)	가족 동행 여부*
1	2022	-	-	-	일본	-	-	- (공식 방문기관 없음)	2,206	○
2	2022	-	-	-	필리핀	-	-	- (공식 방문기관 없음)	2,500	○
3	2023	-	-	-	크로아티아	-	-	- (공식 방문기관 없음)	2,500	×
4	2023	-	-	-	이탈리아	-	-	- (공식 방문기관 없음)	2,500	○
5	2023	-	-	-	일본	-	-	- (공식 방문기관 없음)	2,500	×
6	2023	-	-	-	일본	-	-	- (공식 방문기관 없음)	2,500	○
7	2023	-	M	-	일본	-	-	- (공식 방문기관 없음)	2,233	○
8	2023	-	-	-	영국	-	-	- (공식 방문기관 없음)	2,500	○
9	2024	-	L	-	미국	-	-	- (공식 방문기관 없음)	2,500	○
10	2024	-	-	-	대만	-	-	- (공식 방문기관 없음)	2,500	○
11	2024	-	-	-	일본	-	-	- (공식 방문기관 없음)	2,500	×

자료: 청주교육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 배우자, 자녀 등 가족 동행(경비는 개인 부담)

교 육 부

주의·시정·통보

제 목 직원 학생지도비 지급 관련 실적 산정 및 점검 부적정

소 관 기 관 청주교육대학교

조 치 기 관 청주교육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청주교육대학교는 학년도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계획(이하 “교연비 지급계획”）」에 따라 학생 지도(대학 생활 적응 및 안전 지도) 계획과 실적을 제출한 직원들에게 학생지도비를 지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회계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국립대학회계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교직원에게 지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6항에 따르면 제1항 제2호(교육·연구·학생지도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담당 업무 실적을 기준으로 각 영역별 지급 기준을 정할 것)에 따른 실적의 인정 기간 및 인정 방법, 영역별 지급액,

지급시기 등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대학의 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 가이드라인」(교육부)¹³⁾에 따르면 총장은 관련 법령과 동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교내 심사위원회는 교육, 연구, 학생지도 등에 실제 참여하여 수행한 활동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 또는 비용 지출 증빙서류로 엄격하게 실적을 심사하여야 하고 총장은 매년 1회 교연비 지급실적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당해연도 3월말까지 교육부로 제출하고,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주교육대학교는 「교연비 지급계획」을 매년 수립¹⁴⁾하여, 재직 중인 교직원 중 ‘계획서’ 및 그에 따른 ‘실적물’을 실제 제출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총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영역별 계획서와 실제 참여하여 수행한 활동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 또는 비용 지출 증빙서류에 대한 실적 등을 심사¹⁵⁾하고 이후에는 자체점검단을 구성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점검하고 있다.

2023학년도에의 경우 교직원 중 직원들은 학생지도영역에서 [표 1]과 같이 총 8개의 지표 중 ‘⑧ 대학 생활 적응 및 안전 지도’ 지표로 계획서 및 실적을 제출¹⁶⁾하였다.

13) 학년도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교육부)의 참고자료로 포함되어 있음.

14)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를 3가지 영역(교육영역, 연구영역, 학생지도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지급 기준을 규정

15) 학생지도영역의 경우 실적, 출장비 및 수당 이중 지급 현황 등을 검토·확인

16) 신분변동자(신규, 퇴직, 복직 등)의 경우에는 기준액을 재직기간으로 월할 계산함.

[표 1] 학생 지도영역의 지표 및 배점(직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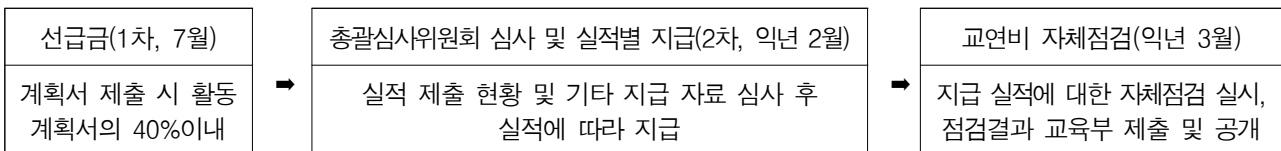
구분	지도영역	지도내용	시간당배점	비고
학생 지도 지표	① 교육실습 지도 ~ ⑦ 대학 및 학과 행사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안, 수업 분석, 수업 참관 및 협의회, 실습록 지도 <li style="text-align: center;">⋮ ■ 개강 및 종강 총회 입장지도, 정기 공연 및 졸업 연주회, 전시회 지도 	각 지도 영역별 2	1일 최대 4시간까지 인정
	⑧ 대학 생활 적응 및 안전 지도	■ 어린이날 행사 학생 안전 지도	2	
		■ 대동제, 동아리 축제 및 공연 시 학생 안전 지도	2	
		■ 생활관 화재대피훈련, 학생 집회, 대회 참가 등 학생 안전 지도 및 인솔 지도	2	
		■ 중간/기말고사, 임용고사 기간 중 안전 지도	2	
		■ 도서관 이용 학생 지도	2	
		■ 야간 특강 시 학생 안전 지도	2	
	■ 강의실 공용공간 방역 등 학생건강 안전 지도	2		

※ 직원: 지도영역 ①~⑧까지의 실적을 합하여 연간 82점(82점×50천 원=4,100천 원),

①~⑦까지의 지도영역 및 지도내용은 직원이 선택하지 않았기에 일부만 표기함.

학생지도영역의 실적 증빙으로는 내부기안, 지도일지, 또는 기타 증빙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학생 안전 지도를 주관하는 부서의 활동일지(서명부)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표 2]와 같은 절차로 학생지도비를 지급받고 있었다.

[표 2] 학생지도비 지급시기 및 방법(학생지도영역)



한편, 「2023학년도 교연비 지급계획」에는 [표 3]과 같이 학생지도영역 학생지도 일지-지도 영역에 1시간당 2점(1시간 미만 실적 불인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표 3] 학생지도영역 학생지도 일지([별첨 3-4])

20 학년도 학생지도영역 학생지도 일지		
제 출 자	성명 : _____ (서명)	소속 : _____
지도 날짜	년 ()월 ()일	
지도 영역	<p>지표: 1시간당 2점(1시간 미만 실적 불인정), 1일 최대 4시간</p> <p>교육 실습 () 상담 및 멘토링, 분과 활동 () ■ 대학특성화 () 외부 대회/공모전 () ■ 학생 집단 활동 () ■ 학술 행사 () 대학 및 학과 행사 () ■ 대학 생활 적응, 안전 ()</p>	

따라서 직원들은 학생지도영역의 실적 제출 시 1시간 미만 여부를 확인하여 본인의 실적을 제출하여야 하고, 청주교육대학교는 학생지도비 지급 시 직원들의 활동일지(서명부)와 시간당 실적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청주교육대학교 N 등 직원 3명은 [표 4]와 같이 학생 안전 지도 시간 내에 본인 차량을 입·출차 하였음에도 해당일의 지도 시간 중 1시간 미만의 시간당 학생 지도 실적을 제외하지 않는 등 실적 제외 시간을 반영하지 않고 인정 시간 전부를 실적으로 제출하였다.

[표 4] 학생지도영역(학생 안전 지도) 실적 및 차량 입·출차 내역

(단위: 원)

연번	부서 (직급)	성명	학생 안전 지도 실적 제출		학생 안전 지도 시간 내 차량 입·출차 기록*		실적 제외 시간	부적정 수령액
			시작 및 종료일시	인정 시간	입차일시	출차일시		
1	-	N	2023.12.8.(금) 18:00 2023.12.8.(금) 21:00	3		2023.12.8.(금) 20:12	1시간 (20:00-21:00)	100,000
2	-	O	2023.12.9.(토) 13:00 2023.12.9.(토) 17:00	4		2023.12.9.(토) 16:33	1시간 (16:00-17:00)	100,000
3	-	-	2023.12.4.(월) 21:00 2023.12.5.(화) 00:00	3	2023.12.4.(월) 21:36	2023.12.4.(월) 22:08**	1시간 (21:00-22:00)	100,000
4	-	-	2023.12.6.(수) 18:00 2023.12.6.(수) 21:00	3		2023.12.6.(수) 19:51	2시간 (19:00-21:00)	200,000
합계								500,000

* 실적 제외 시간 관련 내역을 표기

** 가족이 차량을 운행하여 학교에 입·출차([표5] 학생 지도 시간 내 출입차 직원 개인별 소명 사항 참고)

또한, 청주교육대학교는 직원들의 학생지도비 지급 실적에 대해 연가, 출장, 초과근무 등 복무와의 중복 여부는 점검하였으나, 직원들의 차량 입·출차 기록이 존재하였음에도 이를 학생 안전 지도 내역과 대조하여 실적인정 여부를 점검하지는 않았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청주교육대학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해당자들의 경우 지적된 사항이 일회적이고 미충족 시간이 1시간 미만인 직원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주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2024학년도에는 학생 지도 실적 확인 시 서명부뿐만 아니라 학생지도의 시작, 중간, 종료 시 안면인식 체크기로 확인(시간, 이름, 사진 등이 기록됨)하도록 개선 조치하였다고 답변하였다.

② 관련자 의견

관련자 3명은 [표 5]와 같이 개인별 소명 사항을 제출하였다.

[표 5] 학생 지도 시간 내 출·입차 직원 개인별 소명 사항

성명	개인별 소명 사항
N	○ 2023.12.8.(금)에 개인 불찰로 출차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여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였음
O	○ 2023.12.9.(토)의 경우 학생지도 시 마지막 시간대(5조, 15:40~16:50)의 학생지도가 예정 시간보다 다소 빨리 끝나 뒷정리 후 운영 담당자의 확인을 받고 귀가하였음 - 마지막 시간대의 33분은 운영부서의 판단에 따라 1시간 상당으로 인정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됨
P	○ 2023.12.4.(월)의 경우 가족이 본인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가족이 출차를 하였음(집에서의 출발시간이 지체되었음) ○ 2023.12.6.(수)의 경우 급한 용무로 부득이 일찍 귀가하였음

③ 검토결과

청주교육대학교의 「2023학년도 교연비 지급계획」에 따르면 학생지도영역의 지표로 1시간당 2점(1시간 미만 실적 불인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시간당 실적을 미충족 할 경우에는 명백히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관련자 중 실적 인정 여지가 있다는 O의 경우에도 이를 실적으로 인정할 만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해당 소명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주교육대학교는 교육부 특정감사(2021년도)에서 학생지도영역 실적 심사 등 부적정 등으로 구체적인 증빙을 갖춰 심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권고¹⁷⁾받은 사실도 있으나, 이번 지적 건과 같이 차량 입·출차 기록을 활용한 점검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다만, 제출한 학생 지도 실적 부적정 건이 개인별로 1건에서 2건에 그치고 있고 이에 따른 부당 수령 금액이 소규모인 점, 2024학년도에는 학생지도 실적 시간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개선 조치를 시행한 점은 처분 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조치할 사항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은

- ① 실적 제외 시간을 포함하여 학생지도비 지급 실적을 제출한 N 등 3명에게 주의 조치하고, (주의)
- ② 부적정하게 지급된 학생지도비 합계 500,00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며, (시정)
- ③ 차량 입·출차 기록을 보존하여 자체점검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계획과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학생지도비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17) 상담내용 및 시간, 지도학생 입력 등 실적보고 관련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갖춰 학생지도영역 실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권고

교 육 부

통 보

제 목 맞춤형 복지점수 중 가족복지점수 오배정

소 관 기 관 청주교육대학교

조 치 기 관 청주교육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청주교육대학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2021~2024년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계획」(청주교육대학교)에 따라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점수를 배정·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1장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개인별 맞춤형 복지점수는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기본복지점수와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및 추가복지점수로 [표 1]과 같이 구성하여 배정(매년 1월 1일을 기준)하고, 그 중 가족복지점수의 배정 대상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과 동일하게 되어 있다.

[표 1] 맞춤형 복지점수의 구성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 400점 일률 배정	- 근무연수 1년당 10점 - 최고 30년까지 최고 300점 배정	- 배우자 포함 4인 이내로 하되, 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 - 배우자 100점, 직계존·비속 등 1인당 50점 다만, 직계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점

또한, 「같은 업무지침」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점수의 과오배정, 해외파견으로 인한 환수 불능 등 소급·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마감 후라도 소급 배정·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주교육대학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 대상인 교직원에게 가족복지점수 배정 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에게는 100점, 직계 존·비속 등에게는 각 50점의 맞춤형 복지점수를 배정하여야 하고, 맞춤형 복지점수를 과오배정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마감 후라도 소급·환수 배정할 수 있도록 검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청주교육대학교는 [표 2]와 같이 가족수당을 지급한 Q에게 첫째 자녀의 2021년도분 가족복지점수 50점을 미배정하는 등 2021년도부터 2023년도 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한 Q 등 교직원 10명의 부양가족 11명에 대한 가족복지점수 합계 1,150점¹⁸⁾을 배정하지 않았다.

또한, 맞춤형 복지점수를 배정받지 않은 Q 등 교직원 10명에게 소급 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2] 가족점수 미배정 현황(2021~2023)

(단위: 점, 천 원)

연번	소속	직급(직위)	성명	부양가족 현황		가족수당 변동 내역	미배정 점수 (미배정액)	미배정 연도
				관계	대상자			
1	-	-	Q	첫째	-	2021년(만19세, 2021.11월)	50	2021년
2	-	-	-	부	-	2022년(세대분리(2022.8월))	100	2021년 2022년
3				모	-		100	
4	-	-	-	모	-	2022년(퇴직, 2022.6월)	50	2022년

18) 복지점수 1점은 1천 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합계 1,150천 원으로 환산됨.

연번	소속	직급(직위)	성명	부양가족 현황		가족수당 변동 내역	미배정 점수 (미배정액)	미배정 연도
				관계	대상자			
5	-	-	-	셋째	-	2022년(퇴직, 2022.2월)	400	2021년 2022년
6	-	-	-	첫째	-	2021년(만19세, 2021.9월)	50	2021년
7	-	-	-	첫째	-	2023년(만19세, 2023.1월)	50	2023년
8	-	-	-	배우자	-	2022년(혼인, 2022.1월), (퇴직, 2022.11월)	100	2022년
9	-	-	-	배우자	-	2022년(혼인, 2021.7월)	100	2022년
10	-	-	-	둘째	-	2021년(만19세, 2021.3월/ 전출, 2021.7월)	100	2021년
11	-	-	-	모	-	2022년(세대분리, 2022.3월)	50	2022년
합계							1,150	

관계기관 의견

청주교육대학교는 일부 가족수당 지급대상의 변동 사항이 맞춤형 복지점수의 가족복지점수 배정 시 미반영된 경우가 있었으나, 2024년 가족복지점수 배정 시에는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 맞게 배정하였고, 미배정된 맞춤형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2025년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소급하여 추가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매년 초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 시 현행화된 가족수당 지급 내역을 반영하여 적절한 점수를 배정하고, 미배정 내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확인 후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은

미배정된 맞춤형 복지점수 1,150점을 관련자에게 배정하는 등 조치를 검토하고, 향후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맞춤형 복지점수를 적정하게 배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교 육 부

기관경고·통보·<별도조치>통보

제 목 ♡♡ 예산 편성·집행 규정 미준수 및 소관 위원회 운영 미흡

소 관 기 관 청주교육대학교

조 치 기 관 청주교육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청주교육대학교 ♡♡은 「청주교육대학교 학칙」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부속 시설 중 하나로, ▼▼장관으로부터 대학 부설 ♡♡으로 지정되어 [표 1]과 같이 ◀◀, ◆◆, && 등으로부터 지정 위탁 또는 공모·선정의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 받아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표 1] 최근 3년간 ♡♡ 운영 현황(예산 집행계획 기준)

(단위: 천 원)

연번	학년도	직원	강사 규모	의사 결정 기구	재원	사업명	대상	예산액	예산 비목					비고 (방식)
									직접비				간접비	
									인건비	장비·재료비	활동비	사업수당		
1	2021	3	내부 18 외부 4	①운영 위원회,	◀◀	-	초 55 중 96	224,000	30,682	11,048	168,204	3,400	10,666	지정위탁
			내부 2	②자문 위원회,	◆◆	-	중 8	18,000	-	1,069	15,131	-	1,800	지정위탁
			내부 12 외부 7	③선정 추천심사 위원회	&&	-	초 14 중 7	16,000	-	1,143	13,257	-	1,600	지정위탁
2	2022	상동	내부 18 외부 7	상동	◀◀	-	초 65 중 84	204,000	38,000	7,154	144,628	4,504	9,714	지정위탁
			내부 2		◆◆	-	중 11	22,000	-	900	20,000	-	1,100	지정위탁
			내부 10 외부 4		&&	-	초 15 중 6	18,000	-	1,353	14,847	-	1,800	지정위탁
3	2023	상동	내부 16 외부 6	상동	◀◀	-	초 60 중 94	208,700	37,787	9,782	146,126	5,067	9,938	지정위탁
			-		◀◀	-	8개 영재 교육원	100,000	-	1,508	84,953	8,778	4,761	공모
			내부 2		◆◆	-	중 5	11,000	-	316	10,134	-	550	지정위탁
			내부 7		★★	-	초 66	20,000	-	1,100	17,871	-	1,029	공모
			내부 10 외부 8		&&	-	초 17 중 6	26,000	-	2,638	20,762	-	2,600	지정위탁

※ 자료: 청주교육대학교 ◎◎ 제출자료(사업계획서 등) 재구성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가. ♡♡ 예산 편성·집행 관련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장관은 '스'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에 위탁하고,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스사업 운영관리지침」(○○)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르면 교육부장관과 ▼▼장관은 ◀◀에 'O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은 ○○과 업무 협약을 맺고 '스'을 재원으로 하는 'O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주관하면서, 27개 대학과 매년 협약을 통해 대학 부설 ♡♡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과 대학 부설 ♡♡간 협약서 내 “예산 편성 및 집행 유의사항” 공통 사항에 따르면 「스사업 운영관리지침」(○○) 및 「대학 부설 ♡♡ 사업운영지침」(◀◀)을 따라야 하고, 스 외 예산은 관련 재원의 운영지침을 따르되, 동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 자체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다음은 대학 부설 ♡♡이 준수해야 하는 주요 지침별 내용이다.

1) 스사업 운영관리지침(이하 “스”이라 한다)

「스」 제6조에 따르면 사업비는 직접비(인건비·시설장비비·사업재료비·사업활동비·사업수당·위탁사업비)와 간접비로 나누고, “비목별 세목에 대한 계상·집행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비목별 세목 계상·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업참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을 해당 사업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고, 대학교수·기업·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 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해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

“같은 기준”에 따르면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경비(여비, 회의비, 사무용품비, 전문가 활용비, 기기 구입비 등)에 해당하는 ‘사업활동비’로 사업참여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집행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단일과제의 수행기관 간 (주관기관↔참여기관, 참여기관↔참여기관) 거래뿐만 아니라 총괄·세부과제의 수행 기관 간 사업참여원 대상 전문가 활용비 지급 거래를 불허하며, 위반 시 부당 집행 사례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2) 대학 부설 ♡♡ 사업운영지침(이하 “ㄷ”이라 한다)

「ㄷ」 ‘사업예산 편성’에 따르면 사업비는 ♡♡ 행정담당이 「ㄷ」에 따라 집행 하고 비목별 세목 계상·집행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ㄷ」 ‘교육 과정 운영’, ‘사업예산 편성’ 및 ‘교육원 운영 유의사항’에 따르면 교육과정 운영은 연간 100시간 이상 심화교육과정, 80시간 이상 사사과정으로 구성·운영해야 하고, 학생부담금(1인당 연간 100만 원 이내)으로 운영되는 활동은 정규시수 외의 “선택적 특별활동 비용”으로만 제한하면서 필요경비 발생 시마다 별도로 청구·운용해야 하며, 징구한 학생부담금으로 ○○의 운용비용에 해당하는 인건비, 강사비, 교육비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은 절대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3)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이하 “ㄱ”이라 한다)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3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조 및 「ㄱ」 내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원칙’에 따르면 ♡♡은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근직원의 인건비, 시설운영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등 운영비로 편성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인건비’는 관련 규정 등에 따른 봉급, 정근수당,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되어 있다.

4) ♡♡ 예산 집행 기준(이하 “ㄷ”이라 한다)

「청주교육대학교 부설 ♡♡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은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ㄷ」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기준」에 따르면 ♡♡ 예산을 ‘인건비’, ‘사업 장비 및 재료비’, ‘사업 활동비’, ‘사업 추진비’ 목으로 구분하며, ‘인건비’는 내·외부 연구원의 보수와 수당으로, ‘사업 장비 및 재료비’는 범용성 기자재 구입비와 교육프로그램별 재료구입비로, ‘사업 활동비’는 강사료·프로그램 개발비·학생 장학금·연구 활동비·관찰지도교사 활동비·행정실험보조 활동비·관찰지도교사 워크숍(훈련 포함) 지도비·추천서 및 각종 상담 관련 활동비·각종 수당(선발 관련 수당, 심화프로그램 평가 수당, 캠프 및 위탁프로그램 사업 관리 지도비) 및 운영 보조비로, ‘사업 추진비’는 출장여비와 회의비 및 자문비로 되어 있다.

나. ♡♡ 소관 위원회 운영

「ㄷ」 ‘신입생 선발’에 따르면 선발심의위원회 구성시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

「청주교육대학교 부설 ♡♡ 규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기본 운영 계획, 운영규정 개정, 예산과 결산 등)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원장을 위원장으로 12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또 대상자의 선정·추천에 대한 심의를 위해 “선정추천심사위원회”를 두고 원장을 포함한 운영위원을 당연직으로 하여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정규 교육과정은 초·중등심화교육과정과 사사과정으로 운영하되 각 반의 교육과정은 전임교원의 요청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가, 나에 따라 청주교육대학교 부설 ♡♡은 운영 재원별 예산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했고, 소관 위원회 구성·운영 시에는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운영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종합감사 기간 동안 ♡♡의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이 사업 예산 편성·집행 시 준수해야 하는 각종 지침 및 트을 미준수한 사례들이 확인되었고, 권고된 외부위원보다 적게 선정추천심사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상위 지침에 어긋나는 트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적용하는 등 소관 위원회 운영상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가. 예산 편성·집행 규정 미준수

1) ㄱ 미준수

♡♡은 [표 2]와 같이 「트」에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상근 직원(대학회계직)의 인건비(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별도로 정해 예산을 집행해 오고 있었다.

[표 2] 자체 기준 내 인건비 지급 기준 및 예산 집행 현황

연번	자체 기준	인건비 지급 기준	위반 사항	실 집행액	비고									
1	2020. 4.14. 기준 2022. 11.17. 기준	<p>1. 인건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차」,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집행</div> <p>1-1. 내·외부 인건비(연구원)</p> <p>1. 보수</p> <p>가. ♥♥에는 내외부 직원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p> <p>나. 위촉된 상근연구원(보조원)에게는 협상을 통해 해당년도 월 급여를 결정한다.</p> <p>다. 월 급여를 포함한 4대 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금적립금 등을 합산하여 계상한다.</p> <p>2. 수당</p> <p>가. 내외부 직원의 경우 업무 범위와 내용을 고려하여 매월 지급 수당을 책정한다.</p> <p>나.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직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월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p> <table border="1" style="margin: 5px 0;"> <thead> <tr> <th>직 급</th> <th>시간외(시간당)</th> <th>휴일(일당)</th> </tr> </thead> <tbody> <tr> <td>연구원(상근)</td> <td>11,000원</td> <td>90,000원</td> </tr> </tbody> </table> <p>※ 내·외부인건비와 관련한 연봉책정과 비상근연구원의 수당은 차후년도 사업예산을 고려하여 책임교수회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p>	직 급	시간외(시간당)	휴일(일당)	연구원(상근)	11,000원	90,000원	상위 지침을 위반한 「자체 기준」 개정·적용으로 대학 소속 직원의 인건비(시간외 근무수당)를 사업비에서 현금으로 지급	(2021년) 3,770천 원 (2022년) 3,250천 원				
직 급	시간외(시간당)	휴일(일당)												
연구원(상근)	11,000원	90,000원												
2	2023. 2.20. 기준	<p>1. 인건비 : 원칙 상동</p> <p>1-1. 내·외부 인건비(연구원)</p> <p>1. 보수 : 가, 나, 다 상동</p> <p>2. 수당</p> <p>가. 상동</p> <p>나. 상동</p> <table border="1" style="margin: 5px 0;"> <thead> <tr> <th>직 급</th> <th>시간외(시간당)</th> <th>휴일(일당)</th> </tr> </thead> <tbody> <tr> <td>연구원(대학 소속)</td> <td>11,000원</td> <td>90,000원</td> </tr> <tr> <td>연구원(자체 직원)</td> <td colspan="2">근로기준법 기준</td> </tr> </tbody> </table> <p>※ 상동</p>	직 급	시간외(시간당)	휴일(일당)	연구원(대학 소속)	11,000원	90,000원	연구원(자체 직원)	근로기준법 기준		상동	(2023년) 1,710천 원	
직 급	시간외(시간당)	휴일(일당)												
연구원(대학 소속)	11,000원	90,000원												
연구원(자체 직원)	근로기준법 기준													

또한, [표 3]과 같이 ♥♥이 주관하고 타 대학 부설 ♥♥ 8개가 참여한 2023년 권역별 ○○ 협의체 운영 사업에서 '사업활동비'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간 소속 직원(사업참여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활용비 명목의 예산을 편성·집행하였다.

[표 3] 2023년 권역별 ◎◎ 협의체 운영 사업 내 '사업활동비(전문가 활용비)' 집행 현황

연도	건명	집행대상(사업참여원)	집행액	비고
2023	-	참여기관 7명	1,750천 원	1인당 자문료 25만 원
	-	참여기관 8명	2,400천 원	1인당 자문료 30만 원
	-	참여기관 소속직원 10명	2,000천 원	1인당 자문료 20만 원
	-	참여기관 소속직원 14명	2,800천 원	1인당 자문료 20만 원
	-	참여기관 8명	2,000천 원	1인당 자문료 25만 원
	-	참여기관 8명	2,000천 원	1인당 자문료 25만 원
	-	참여기관 8명	2,000천 원	1인당 자문료 25만 원

2) 사업운영지침 미준수

♡♡은 [표 4]와 같이 정규 시수에 포함된 교육과정(프로그램) 운영에 학생 부담금을 징구하고, 학생부담금으로 집행을 금지하는 운영비 등으로 집행을 하였다.

[표 4] 연도별 학생부담금 징구 및 집행 현황

연도	징구액	선택적 특별활동 여부	집행 금지 부문 집행액				비고
			인건비	강사비	교육비 등 운영비	계	
2021	24,210천 원	×	1,500천 원	5,550천 원	1,383천 원	8,433천 원	
2022	26,191천 원	×	1,210천 원	6,700천 원	2,062천 원	9,972천 원	
2023	47,700천 원	×	450천 원	23,461천 원	4,314천 원	28,225천 원	

3) ㄱ 미준수

♡♡은 ◆◆ 위탁 ㅎ 사업에서 [표 5]와 같이 상근직원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행정지원(지도)비라는 명목으로 정액수당을 집행하였고, 2022년도에는 협약서상 사업기간에 속하지 않는 월(2022년 3월)에도 행정지도비를 집행하였다.

[표 5] 교육청 보조금으로 행정지원(지도)비(월 정액수당) 집행 현황

연도	재원	협약서 상 사업기간	행정지원(지도)비 지급 대상	지급 기간	지급 기준	지급액	비고
2021	◆◆	2021. 4.~12.	-	4~12월, 8개월	월 10만 원 정액	2,400천 원	ㅎ
2022	◆◆	2022. 4.~12.	-	3~12월, 9개월	월 10만 원 정액	2,700천 원	
2023	◆◆	2023. 4.~12.	-	4~12월, 8개월	월 10만 원 정액	2,400천 원	

※ 2021~2022년은 행정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집행하고, 2023년은 행정지도비라는 명목으로 월 정액수당 집행

4) 자체 기준 미준수

♡♡은 [표 6]과 같이 2023년 && 재원으로 「ㄷ」 3-8. 각종 수당 내 ‘ㄱㄱ’ 지급 기준에 없는 “인솔비”라는 명목으로 원장 등 3명에게 1회 30만 원씩 집행하였다.

[표 6] 자체 기준 내 사업활동비(각종 수당) 지급 기준 및 예산 집행 현황

순	자체 지침	사업 활동비 지급 기준	실 집행 현황	비고																										
1	2023. 2.20. 기준	3-8. 각종 수당 1. 교육원 학생 선발 관련 수당 2. 심화과정의 4차시 단위의 심화 프로그램 평가 수당 3. ㄱㄱ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야간 관리 지도비</td> <td>1일 70,000원(안전관리)</td> <td rowspan="4" style="vertical-align: middle;">예산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td> </tr> <tr> <td>행정보조</td> <td>300,000원</td> </tr> <tr> <td>학생근로</td> <td>시간당 7,000원</td> </tr> <tr> <td>외부인력</td> <td>-</td> </tr> </table>	야간 관리 지도비	1일 70,000원(안전관리)	예산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행정보조	300,000원	학생근로	시간당 7,000원	외부인력	-	3. ㄱㄱ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 colspan="3">인솔비</th> <th rowspan="2">기준</th> </tr> <tr> <th>대상</th> <th>회수</th> <th>집행액</th> </tr> </thead> <tbody> <tr> <td>원장</td> <td>2회</td> <td>600천 원</td> <td rowspan="3">1회 30만 원</td> </tr> <tr> <td>교수(강사)</td> <td>2회</td> <td>600천 원</td> </tr> <tr> <td>교수(강사)</td> <td>2회</td> <td>600천 원</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초등, 중등</p>	인솔비			기준	대상	회수	집행액	원장	2회	600천 원	1회 30만 원	교수(강사)	2회	600천 원	교수(강사)	2회	600천 원	
야간 관리 지도비	1일 70,000원(안전관리)	예산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행정보조	300,000원																													
학생근로	시간당 7,000원																													
외부인력	-																													
인솔비			기준																											
대상	회수	집행액																												
원장	2회	600천 원	1회 30만 원																											
교수(강사)	2회	600천 원																												
교수(강사)	2회	600천 원																												

나. ♡♡ 소관 위원회 운영 미흡

♡♡은 [표 7]과 같이 2021년과 2022년에 「ㄷ」 내 권고사항과 달리 선정추천 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과반수 미만으로 위촉·운영하였다.

[표 7] 선발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연번	학년도	위원회명	위원 수	내부위원(교수)	외부위원 (과반수 여부)	비고
1	2021	선정추천심사위원회	5	3	2 (×)	위원회 추천, 원장 임명
2	2022	선정추천심사위원회	5	3	2 (×)	
3	2023	선정추천심사위원회	6	3	3 (○)	

또한, [표 8]과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교육과정(프로그램)임에도 학생부담금을 징구한다는 계획을 심의하여 「ㄷ」을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 예산 집행 기준이 「ㄷ」에 위배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표 8] 위원회 운영 미흡 사례

연번	학년도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상위 지침에 위배되는 내용(안건)의 심의·의결 사례	비고
1	2021	기본 운영 계획 (예산안 포함)	정규 교육과정 시수에 포함되는 프로그램에 학생부담금 징구	
2	2022	기본 운영 계획 (예산안 포함)	정규 교육과정 시수에 포함되는 프로그램에 학생부담금 징구	
		예산 집행 기준	인건비 내 상근직원(대학회계직)의 인건비(시간외근무수당) 현금 지급 기준 포함 개정	
3	2023	기본 운영 계획 (예산안 포함)	정규 교육과정 시수에 포함되는 프로그램에 학생부담금 징구	
		예산 집행 기준	인건비 내 상근직원(대학회계직)의 인건비(시간외근무수당) 현금 지급 기준 포함 개정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가. 예산 편성·집행 규정 미준수 관련

청주교육대학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ㄷ」 상 대학 소속으로 대학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상근직원의 경우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고 현금으로 인건비를 받지 않아야 하는데 「ㄷ」에 근거하여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인건비를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고, 2023년 권역별 ○○ 협의회 운영 사업에서 「ㄷ」 상 계상·집행할 수 없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소속 직원에게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한 이유는 담당자의 지침 미숙지로 인한 것이었다며 향후 지침을 숙지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ㄷ」을 위배하여 선택적 특별활동이 아닌 정규시수에 포함된 교육과정(프로그램)에 학생부담금을 징구한 것은 담당자가 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이유였다고 앞으로는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학생부담금 징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등 업무처리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 보조금으로 운영한 ☞은 매년 교부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교육청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과정을 통해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검토받고 있고, 교육청의 예산 편성 승인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 왔으며, 협약서 상 사업기간에 속하지 않은 2022년 3월에 월 정액수당으로 10만 원의 행정지원(지도)비를 지급한 이유는 3월부터 학생 모집 등 사업 관련 업무 수행을 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2024학년도부터는 보조금으로 월 정액수당 지급의 적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행정지원(지도)비 제도를 폐지하였고, 동 예산을 학생 활동 재료비 등으로 변경하여 편성·집행하고 있음을 고려해달라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트」 집행 항목에 없는 캠프 ‘인솔비’ 명목으로 원장 및 교수(강사)에게 인솔비를 지급한 이유는 && ㄱ은 단순히 외부기관을 방문·견학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외부기관 시설 및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사전에 개발하고 당일에는 학생들과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에 대한 수당 지급으로 처리하였어야 했는데, 이를 인솔비 항목으로 잘못 배정하여 집행하였다며 차후에는 프로그램(사업)의 실질적 성격에 부합한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종합하면, 청주교육대학교는 ♡♡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관련 규정 숙지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집행을 하지 않겠으며,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자체 예산집행 기준은 추후 개정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나. ♡♡ 위원회 운영 미흡 관련

청주교육대학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 소관 위원회 구성 및 상위 지침에 어긋난 자체 집행 기준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적용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명확한 운영 규정 및 예산 편성·집행 기준을 설정하여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② 검토결과

청주교육대학교가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앞으로 ♡♡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관련 규정 숙지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규정 및 재원별 지침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겠다고 한 점, 실제 현장방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프로그램으로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한 점, 소관 위원회 구성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위원회에서 상위 지침에 어긋난 예산 집행 기준을 심의·적용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점 등은 처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은

- ① ♡♡으로 하여금 예산 편성·집행 시 재원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엄중 경고 조치하고, (기관경고)
- ②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 강화,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자체 기준 개정, 소관 위원회 운영 권고 준수 등 ♡♡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도조치>

(◀◀ 통보)

(◆◆ 통보)

교 육 부

주의·시정

제 목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 부적정

소 관 기 관 청주교육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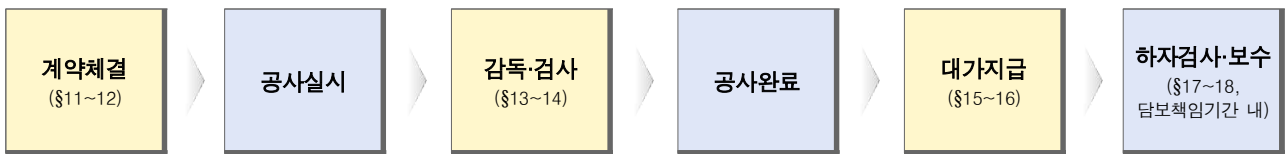
조 치 기 관 청주교육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청주교육대학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에 따라 시설공사를 감독·검사하고 있다. 또한, 시설공사 관련 업무의 일반적인 진행 절차는 [그림]과 같다.

[그림] 시설공사 일반 절차



자료: 「국가계약법」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계약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 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 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 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주교육대학교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내용에 대해 감독·검사하고, 계약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하며, 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 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청주교육대학교 R 등 3명은 [별표] “시설공사 물량 과다 산정 및 미시공 현황”과 같이 “기공공사(계약금액 478,274천 원, 공사기간 2023. 00. 00. ~ 2023. 00. 00.)” 등 6건의 공사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물량을 과다 산정(창호 유리 설치 합계 182㎡)하거나 미시공(화강석 판넬 11㎡, 시스템 비계 434㎡, 슬라브 코어 작업 8개소)하였음에도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준공금액으로 확정하여 합계 34,462천 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였다.

또한, R는 위 “ㄱ공사” 추진 시 계약상대자인 ■■가 설계서에 명시된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지 않고 스카이를 사용하였음에도 설계서 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 처리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청주교육대학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향후 공사 추진 시 상급 감독자가 상호보완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창호 유리 설치 과다 산정의 경우 창호의 종류에 따라 산출 방법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함을 숙지하지 못했고, 수량 산출, 내역서, 견적서의 오기 등 오류사항과 관련해서는 실제 투입되는 인력 및 장비가 과다하여 공사비가 증액 되었으나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일부 건은 현장 여건 (공사기간 단축 등)을 고려하여 계약 내역서와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시공 결과는 동일하다고 판단해 감액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ㄱ공사”는 설계서와 달리 시스템 비계가 아닌 스카이를 사용하여도 결과물을 만드는데 동일하다고 판단하였고, 현장 여건상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는 것보다 스카이 및 크레인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안전사고 방지 및 공사 기간 단축 등에 유리하며, 공사 관련 예산이 부족했던 점을 고려하여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추진하였다고 답변하였다.

② 검토결과

청주교육대학교는 창호 유리 설치 과다 산정의 경우 내역서, 견적서 등에 오기가 있었고, 실제 투입 인력 및 장비가 과다하여 공사비가 증액되었다고 주장하나, 내역서, 견적서 등의 오류는 시공 전부터 검토 및 정정하였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실제 투입되는 인력 및 장비가 과다하여 공사비가 증액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 근거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건은 현장 여건(공사기간 단축 등)을 고려하여 계약 내역서와 다른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감액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 외에도 현장 상태와 계약 내역서가 상이할 때 시공 결과가 동일하다고 판단되면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

한편, “그드공사” 추진 시 설계서와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해도 시공 결과가 동일하다고 판단되어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추진했다는 주장은 결과만 동일하면 어떤 장비나 인력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인식을 방증한 것으로, 「국가계약법」 제13조 및 제14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3 등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를 몰각한 답변으로 간주 된다. 또한, 현장 여건상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는 것보다 스카이 및 크레인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방법이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하다는 주장은 구체적 근거 또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인정하기 어렵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발주 금액 617,392천 원, 계약 금액 564,770천 원, 차액 52,622천 원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¹⁹⁾

19) 청주교육대학교에서 제출한 예산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고,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공사내역이 모두 포함된 금액임. 대학에서는 “그드공사”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 예산으로 517,000천 원을 편성하였고, 부족한 비용은 시설설비보수 사업 예산(1,962,000천 원)에서 추가 집행함.

조치할 사항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은

- ① 「국가계약법」,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R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신분상 조치하고, (12번20)에 병합 조치)
- ②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S에게 주의 조치하며, (주의)
- ③ “기공공사” 등 시설공사 미시공 업체 6곳으로부터 과다 지급한 공사비 합계 34,462천 원을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20) 12번: 시설공사 법정경비 정산 부적정

[별표]

시설공사 물량 과다 산정 및 미시공 현황

(단위: 천 원)

연번	공사명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내용 (내역-실제=차이)	과다산정 금액*	담당자
1	그드공사	2023.00.00.	2023.00.00.	2023.00.00.	478,274	■ ■	시스템 비계 미시공 (434㎡-0㎡=434㎡) ※ 스카이 사용	12,323	R
2	-	2021.00.00.	2021.00.00.	2022.00.00.	1,938,332	-	창호 유리 설치 과다 산정 (301㎡-223㎡=78㎡)	8,869	R
3	-	2023.00.00.	2023.00.00.	2023.00.00.	124,473	-	창호 유리 설치 과다 산정 (395㎡-347㎡=48㎡)	8,244	R
4	-	2022.00.00.	2022.00.00.	2022.00.00.	15,390	-	창호 유리 설치 과다 산정 (98㎡-42㎡=56㎡)	2,291	S
5	-	2022.00.00.	2022.00.00.	2022.00.00.	18,920	-	화강석 판넬 미시공 (31㎡-20㎡=11㎡)	1,220	S
6	-	2023.00.00.	2024.00.00.	2024.00.00.	16,893	-	슬라브 코어 작업, 내화 충전 미시공 등 (13개소-5개소=8개소)	1,515	T
합계					2,592,282			34,462	

* 제경비 및 부가세 포함

교 육 부

기관경고·통보

제 목 시설공사 하자검사 부적정

소 관 기 관 청주교육대학교

조 치 기 관 청주교육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청주교육대학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시설공사 하자를 검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1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주교육대학교는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청주교육대학교는 [별표]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 실시 현황”과 같이 2018. 00.부터 2022. 00.까지 준공한 “그르공사” 등 34건의 공사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 하자검사 14건과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실시하여야 하는 최종검사 26건을 실시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청주교육대학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시설공사 건별로 종합적인 하자검사는 실시하였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세부 공종별 정기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최종검사를 미 실시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향후 업무 담당자 간 협조를 통해 하자검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건설공사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교육 실시를 통해 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검토결과

청주교육대학교는 시설공사 건별로 종합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세부 공종별 정기검사 및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고서는 ‘종합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학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은

-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위반하여 시설공사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부서(◆)에 경고 조치하고, (기관경고)
-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시설공사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R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신분상 조치하며, (12번21)에 병합 조치)
- ③ 시설공사 하자검사 여부 점검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21) 12번: 시설공사 법정경비 정산 부적정

[별표]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 실시 현황

(단위: 천 원)

연번	공사명	계약 금액	계약업체	준공일	하자담보 책임기간	정기 검사	최종 검사	담당자
1	그르공사	244,709	-	2018.00.00.	2018.12.27.~ 2023.12.26.	X	O	R
2	-	87,886	-	2019.09.26.	2019.10.07.~ 2021.10.06.	X	X	R
3	-	95,413	-	2019.09.26.	2019.10.07.~ 2022.10.06.	X	X	R
4	-	81,939	-	2020.03.06.	2020.03.12.~ 2022.03.11.	X	O	U
5	-	268,800	-	2020.06.24.	2020.06.29.~ 2023.06.28.	O	X	V, S
6	-	135,480	-	2020.06.24.	2020.06.29.~ 2022.06.28.	O	X	V, S
7	-	1,046,620	-	2020.06.24.	2020.06.29.~ 2022.06.28.	O	X	V, S
8	-	3,133,720	-	2020.06.24.	2020.06.29.~ 2021.06.28.	O	X	V, S
9	-	30,165	-	2020.08.19.	2020.09.01.~ 2022.08.31.	O	X	R
10	-	67,113	-	2020.08.19.	2020.09.01.~ 2021.08.31.	O	X	R
11	-	5,838	-	2020.10.17.	2020.10.21.~ 2021.10.20.	O	X	R
12	-	42,875	-	2020.10.17.	2020.10.21.~ 2022.10.20.	X	X	R
13	-	6,616	-	2020.10.17.	2020.10.21.~ 2023.10.20.	X	O	R
14	-	37,336	-	2021.08.31.	2021.09.13.~ 2022.09.12.	X	X	R
15	-	18,093	-	2021.08.31.	2021.09.13.~ 2023.09.12.	X	X	R
16	-	76,730	-	2021.09.17.	2021.10.01.~ 2022.09.30.	O	X	R
17	-	20,123	-	2021.09.17.	2021.10.01.~ 2022.09.30.	O	X	R
18	-	12,097	-	2021.09.17.	2021.10.01.~ 2022.09.30.	O	X	R
19	-	2,759	-	2021.09.17.	2021.10.01.~ 2022.09.30.	O	X	R
20	-	2,083	-	2021.09.17.	2021.10.01.~ 2023.09.30.	O	X	R
21	-	20,069	-	2021.09.17.	2021.10.01.~ 2023.09.30.	O	X	R
22	-	9,670	-	2021.09.17.	2021.10.01.~ 2023.09.30.	O	X	R

연번	공사명	계약 금액	계약업체	준공일	하자담보 책임기간	정기 검사	최종 검사	담당자
23	-	4,376	-	2021.09.17.	2021.10.01.~ 2023.09.30.	O	X	R
24	-	29,872	-	2021.09.17.	2021.10.01.~ 2023.09.30.	O	X	R
25	-	178,894	-	2021.12.23.	2021.12.27.~ 2023.12.26.	X	O	W
26	-	340,025	-	2021.12.24.	2021.12.27.~ 2023.12.26.	X	O	X
27	-	62,650	-	2022.01.21.	2022.01.24.~ 2024.01.23.	O	X	R
28	-	361,010	-	2022.01.21.	2022.01.24.~ 2023.01.23.	O	X	R
29	-	1,151,408	-	2022.01.15.	2022.1.28.~ 2023.1.27.	O	X	R
30	-	513,989	-	2022.01.15.	2022.1.28.~ 2024.1.27.	O	X	R
31	-	126,959	-	2022.10.02.	2022.10.12.~ 2023.10.11.	X	X	R
32	-	71,424	-	2022.10.02.	2022.10.12.~ 2024.10.11.	X	기한 내	R
33	-	121,489	-	2022.10.02.	2022.10.12.~ 2025.10.11.	X	기한 내	R
34	-	28,379	-	2022.10.02.	2022.10.12.~ 2027.10.11.	X	기한 내	R
미실시 합계						14	26	

교 육 부

징계·경고·시정·<별도조치>통보·고발

제 목 시설공사 법정경비 정산 부적정

소 관 기 관 청주교육대학교

조 치 기 관 청주교육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청주교육대학교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시설공사 법정경비를 정산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가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주교육대학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경비의 사용실적을 확인하고²²⁾, 계약상대자가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법정경비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허위 증빙서류에 대한 법정경비 정산 부적정

청주교육대학교 R은 “ㄱ공사(계약금액 478,274천 원, 공사기간 2023. 00. 00. ~ 2023. 00. 00.)” 준공 서류를 검토하면서 [별표] “시설공사 법정경비 정산 부적정 현황”과 같이 계약상대자인 ■■가 “ㄱ공사(계약금액 974,805천 원, 공사기간 2023. 00. 00. ~ 2023. 00. 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 증빙으로 □□에 기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재사용(총 2건, 합계 14,886천 원)하여²³⁾ 허위 제출했음에도 준공 처리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11,949천 원 (제경비 및 부가세 등 포함)을 과다 지급하였다.

■■²⁴⁾에서 청주교육대학교와 □□에 제출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좌측 상단의 공사명만 다르고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 비교란에 기재된 내용(□□)이 동일하다.

특히 2023. 00. 00.자로 작성한 전자세금계산서(품목: 안전용품, 합계금액 6,636,190원)는 비교란에 ‘□□’라고 기재되어 있어 □□에 확인이 필요하였고, 2023. 00. 00.자로 작성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품목: 안전용품, 합계금액 8,250,000원)는 수정 사유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였음에도 R은 이를 방기하고 준공 처리하였다.

22) 확인 자료 예시: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거래명세서, 사용내역 항목별 사진,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등

23) 재사용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실제 합계 금액은 14,886,190원(6,636,190원+8,250,000원)임.

24) 이번 감사에서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 부적정” 지적내용 중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시스템 비계가 아닌 스카이 사용)하였음에도 설계변경 없이 준공 처리 및 정산하여 12,323천 원 과다 지급한 업체에도 해당됨.

그 결과 ■■는 위 증빙서류로 2023. 00. 00. □□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를 기 지급받고, 2023. 00. 00. 청주교육대학교에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11,949천 원(제경비 및 부가세 등 포함)을 과다 지급받게 되었다.

나. ○○ 세금 미신고 거래명세표에 대한 법정경비 정산 부적정

한편, 위 R은 “ΓΒ공사(계약금액 178,153천 원, 공사기간 2021. 00. 00. ~ 2021. 00. 00.)” 준공 서류를 검토하면서 [별표 1] “시설공사 법정경비 정산 부적정 현황”과 같이 계약상대자인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빙서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누락하고 ○○에 세금 신고하지 않은 거래명세표(작성일자: 2023. 00. 00., 공급자: ◎◎, 합계금액: 456,500원)만 제출²⁵⁾하였음에도 ○○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준공 처리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78천 원(제경비 및 부가세 등 포함)을 과다 지급하였다.

다. 사용내역 미확인 법정경비 정산 부적정

청주교육대학교 S는 “ΓΣ공사(계약금액 192,727천 원, 공사기간 2024. 00. 00. ~ 2024. 00. 00.)” 준공 서류를 검토하면서 [별표 1] “시설공사 법정경비 정산 부적정 현황”과 같이 계약상대자인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빙서류로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납품명세서(2건, 합계 3,299천 원)를 제출하였음에도 금액 조정하지 않고 준공 처리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424천 원(제경비 및 부가세 등 포함)을 과다 지급하였다.

○○이 청주교육대학교에 제출한 납품명세서는 ●●에서 발행하였으나 증빙 서류에는 타사 제품(■■ 안전화) 및 해당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안전모, 소화기 등)이 첨부되어 있었고, 종합감사 기간 중 ●●에 확인한 결과 타사 제품 (■■ 안전화) 및 안전모, 소화기 등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였다.²⁶⁾

25) △△이 청주교육대학교에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2024. 5. 3. 감사일 현재까지도 ○○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라. 목적 외 사용 법정경비 정산 부적정

한편, 위 S는 “○○공사(계약금액 257,433천 원, 공사기간 2022. 00. 00. ~ 2023. 00. 00.)” 준공 서류를 검토하면서 [별표 1] “시설공사 법정경비 정산 부적정 현황”과 같이 계약상대자인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빙서류로 다른 목적(공사장 인근이 아닌 대로(大路)로부터 청주교육대학교로 진입하려는 차량 통제)에 사용한 내역(윙카 호스, PE드럼통)을 포함하여 제출하였음에도 금액 조정하지 않고 준공 처리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23천 원(제 경비 및 부가세 등 포함)을 과다 지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청주교육대학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계약상대자가 법정경비 사용 증빙자료로 제출한 서류(세금계산서 등)를 확인하였으나 서류를 검토한 당시에는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세금계산서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향후 법정경비 정산 시 공사의 규모나 예산 등에 따라 감독자 및 상급 감독자가 교차 점검하는 등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제고하는 등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6) 전자세금계산서와 금액은 일치하였으나, 납품명세서 상 품명이 공급자가 취급하는 품목과 불일치

② 검토결과

R이 준공 처리한 서류 중 ■■에서 청주교육대학교에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는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 □□에 확인 절차만 거쳤더라도 허위임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이었고, △△이 청주교육대학교에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만 조회하였어도 ●●에 세금 신고하지 않은 거래명세표임을 알 수 있는 사항이었다.

그러나 R은 감사 시 문답(2024. 5. 1.)을 통해 ■■에서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오탈자로 여겨 금액 정산하지 않았고, △△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정산 업무를 할 때 ●●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조회한 경험이 없으며, 조회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여 시설공사 법정경비 정산 업무를 해태한 것으로 판단된다.

징계요구 양정(10번, 11번과 병합 조치)²⁷⁾

R은 청주교육대학교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 부적정, 하자검사 미실시, 법정경비 정산 부적정 등 시설공사 관련 업무 전반에 걸쳐 법령을 위반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이러한 R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른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징계사유²⁸⁾에 해당되고,

27) 10번: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 부적정 / 11번: 시설공사 하자검사 부적정

28)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1. 「국가공무원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 1” 징계기준 1. 성실 의무 위반 / 다. 부작위·직무태만에 해당되며, 그 비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할 때 경징계 이상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은**

①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시설공사 법정경비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R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경징계 이상) 조치하고, **(징계)**

② 시설공사 법정경비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S에게 경고 조치하며, **(경고)**

③ “ㄱ공사” 등 시설공사 법정경비 정산 부적정 업체 4곳으로부터 과다 지급한 공사비 합계 17,974천 원을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도조치>

① **(○○ 통보)**

② **(고발)**

[별표]

시설공사 법정경비 정산 부적정 현황

(단위: 천 원)

연번	공사명 (착공일~준공일) (계약일)	계약 금액	구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 보전비	미인정금액 (회수액*)	공사업체 (대표자명)	비고	담당자
1	ㄱ공사 (2023.00.00. ~ 2023.00.00.) (2023.00.00.)	478,274	계약금액	10,569	1,653	8,911 (11,949)	■ ■ (Y)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 (□□에 기 제출한 세금계산서 재사용)	R
			지급금액	7,258	1,653				
			인정금액	-	-				
			미인정금액	7,258	1,653				
2	ㄱ공사 (2021.00.00. ~ 2021.00.00.) (2021.00.00.)	178,153	계약금액	2,000	-	457 (578)	△ △ (-)	● ● 세금 미신고 거래명세표 제출	R
			지급금액	457	-				
			인정금액	-	-				
			미인정금액	457	-				
3	ㄱ공사 (2024.00.00. ~ 2024.00.00.) (2023.00.00.)	192,727	계약금액	3,938	-	3,299 (4,424)	● ● (-)	사용내역 미확인 증빙서류 제출	S
			지급금액	3,299	-				
			인정금액	-	-				
			미인정금액	3,299	-				
4	ㄱ공사 (2022.00.00. ~ 2023.00.00.) (2022.00.00.)	257,433	계약금액	4,002	-	760 (1,023)	● ● (-)	다른 목적에 사용	S
			지급금액	2,814	-				
			인정금액	2,054	-				
			미인정금액	760	-				
합계				20,509	1,653	13,427 (17,974)			
		지급금액	13,828	1,653					
		인정금액	2,054	0					
		미인정금액	11,774	1,653					

* 제경비 및 부가세 포함

교 육 부

기관경고·주의·통보·통보(시정완료)

제 목 전기설비 연간 점검계획 미수립 및 안전점검 등 소홀

소 관 기 관 청주교육대학교

조 치 기 관 청주교육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청주교육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전기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6항,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이하 “직무 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점검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을 반영하여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매년 점검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주교육대학교의 전기안전관리자는 대학 건물의 특성에 따라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매년 점검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청주교육대학교의 전기안전관리자는 2021. 1.부터 2024. 5. 감사일 현재까지 대학 건물의 특성에 따라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았고, 연간 점검계획(총 4건)도 수립하지 않았으며, [별표] “전기설비 안전점검 현황”과 같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필수 점검 항목 총 39개(13개×3년) 중 8개 항목에 대한 주기별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청주교육대학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안전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학내 시설공사(전기·통신·소방공사) 및 시설 안전관리(소방·지진·승강기 안전관리 등) 등 담당하는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하여 안전관리규정 및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2024. 6. 19.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였으며, 향후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용역 추진 등을 통해 전기설비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검토결과

청주교육대학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많고 인력이 부족하여 안전관리 규정 및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수용하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은

- ① 안전관리규정 작성, 전기설비 안전점검 계획 수립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부서 (☐)에 경고 조치하고, (기관경고)
- ② 전기설비 안전점검 등 업무를 소홀히 한 X 등 3명에게 주의 조치하며, (주의)
- ③ 향후 전기설비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련 법령에 맞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④ 또한,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안전관리규정과 관련해서는 2024. 6. 19.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함에 따라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보(시정완료)]

[별표]

전기설비 안전점검 현황(2021년 ~ 2023년)

필수 점검 항목*	연도별 점검 여부 (○, X)		
	2021년	2022년	2023년
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	X	X	○
저압 전기설비 점검			
- 절연저항 측정	X	○	△ (일부진행)
- 접지저항 측정	X	○	△ (일부진행)
고압 이상 전기설비 점검			
- 절연저항 측정	○	○	○
- 접지저항 측정	○	○	○
- 절연내력 측정	○	○	○
변압기 점검			
- 절연저항	X	○	X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X	○	X
예비발전설비			
-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	-	-
- 축전지 및 충전장치 점검	-	-	-
- 발전기 무부하 또는 부하시험	-	-	-
적외선 열화상 측정	○	○	○
전원품질분석	○	○	○
연도별 미점검 항목 수	5	1	2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IV. 현지조치 사항

지적 건명	지적 내용	조치할 사항
1. 공무외국외여행 및 국외자율연수 복무 미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교육대학교 ■ 5명은 연가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 등의 복무 처리 없이 공무외국외여행 또는 국외자율 연수를 실시 <p>【「국가공무원법」 제58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8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 「교육공무원법」 제4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 - 향후 유사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외국외여행 및 국외자율연수 관련 복무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람
2. 특수관계인 연구 과제 참여 신고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교육대학교 Z는 연구과제에 특수관계인 (배우자)을 참여시키면서,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신청서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연구 시작일 이후에 신고 <p>【「특수관계인 연구 참여에 관한 지침 제4조 및 제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 - 향후 연구자가 특수관계인을 참여시킬 경우 사전에 신고·승인을 받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람
3. 정기에금 관리 부적정(만기 해약 지연에 따른 이자 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교육대학교는 정기에금을 만료일에 해지하지 않고 최소 1일에서 최대 110일까지 지연 해지하여 합계 1,612천 원 상당의 이자 손실 발생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대학회계 자체 예산집행 기본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 - 향후 정기에금 해지 지연으로 인한 이자 손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람